

의안번호	2204101
의 퇴 인	김영배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7.
추 계 번호	24B3896
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7조(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(제1항) 1.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 2. 남북 간 연락망 등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3.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4.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※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 및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¹⁾을 구체화함 제1항에 따른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·시행, 위기대응 체계 구축, 북한 수자원 조사의 범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7조(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「물관리기본법」 제37조(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,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2. 상세 사유

□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 증진(안 제37조)

- 개정안은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 및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을 구체화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, 남북 간 연락망 등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,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,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·시행, 위기대응 체계 구축, 북한 수자원 조사의 범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, 현재 「물관리기본법」 제37조에 따라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으나, 홍수기 접경지역 하류 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홍수 대응을 위해 ‘위성기반 접경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(’21~’23, 82억원)*’을 추진한 바 있음

* 고해상도 위성 직수신 활용체계 도입·수자원 분석기술 개발·정보시스템 구축 등, 위성기반 북한댐 모니터링 중(’24년 예산 12억원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